제 4 장

외국법자문사

제4장 외국법자문사

1. 외국법자문사[3]

외국변호사의 국내에서의 외국법자문 업무 수행 허용 등 법률시장 개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외국법자문사법」(법률 제9524호, 2009년 3월 25일 제정)이 2009년 9월 26일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명 칭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변호사의 명칭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명 뒤에 '법자문사'를 붙여 사용하며, 외국 로펌은 본점 사무소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여서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원자격국어로 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 부기 및 국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 병기를 허용하였다[예 : 일본법자문사(日本弁護士, 일본변호사)].

나. 자격승인 및 등록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의 등록이 필요하고,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무경력이 요구된다. 이 때 원자격국 외의 외국(최장 3년), 한국 내(최장 2년)에서의 직무경력도 위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법무부 자격승인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자격승인 신청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국내변호사가 신청을 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2) 자격승인

법무부장관은 ①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일 것, ②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 ③ 직무 경력이 있을 것, ④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⑤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⑥ 변호사의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있을 경우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

3 이 내용은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법무부, 2010)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인을 할 수 있다.

3) 등록신청

(1)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서류
① 여권, 외국인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이력서
③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④ 사진
⑤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된 서면
⑥ 외국변호사로서 받은 상벌 및 직무상 감독기관에 의한 직무경험 연수에 관한 평가를 기재한 서면
⑦ 서약서

4) 등록처리

(1)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1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2) 등록을 할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서와 함께 등록통지서를 발송한다.

5) 등록갱신

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5년(유효기간) 후에 등록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6) 등록심사

협회장은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있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거부에 관한 안건을 회부한다.

7) 등록심사위원회

등록취소, 등록거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변호사법 제10조에 의하여 변호사 4명, 판사 1명, 검사 1명, 법학교수 1명,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2명으로 구성된다(단, 변호사, 판사, 검사의 경우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한 자).

동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변호사법 제8조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고, 변호사로 등록한 자가 동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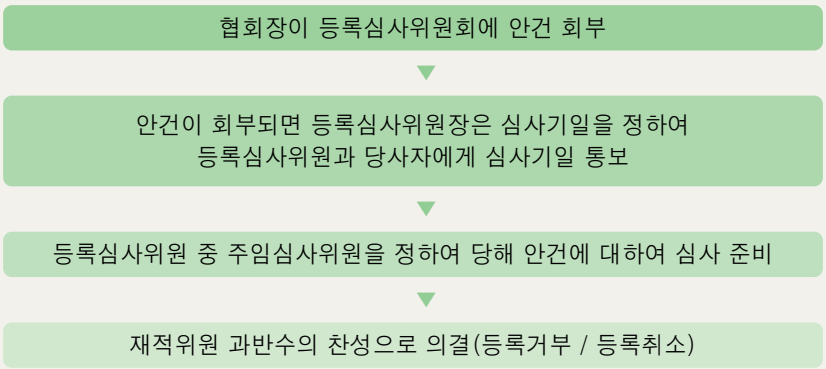

8)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① 설립신청 :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무소나 법인에 소속된 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설립인가 :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③ 등록신청 :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 등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구성원의 성명,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 설립인가 연월일
-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내용

④ 등록심사 :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다. 업무 범위 및 수행, 사무소 개설 방식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 및 원자격국이 당사자인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및 '원자격국의 법령 등'이 적용법령인 국제중재사건 대리업무는 할 수 있으나 소송대리, 법정변호 등 국내법 사무 처리는 금지된다.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 국내 로펌 소속 외국법자문사로만 활동할 수 있을 뿐 외국법자문사의 개인사무소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외국의 본점 사무소를 전제로 한 대표사무소(분사무소)만 설립 가능]. 또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에게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등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라. 외국법자문사의 의무

외국법자문사는 1년에 18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의무(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은 한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 가능)와 함께 직무 관련 비밀침해 · 누설 금지 의무 등이 있다. 또한 현행법은 1단계 수순의 법률시장 개방을 제도화한 것이므로 외국법자문사의 국내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관세사와의 수익분배 · 동업 및 고용은 금지된다.

※ 우리나라는 한 · 미 FTA 협상에서 3단계의 순차별 법률시장 개방을 합의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용
1단계	협정 발효 시까지 시행 준비 완료 필요
	외국변호사의 "원자격국 법령,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등 제한된 범위에서의 국내 영업 및 외국 로펌의 국내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개설 허용. 제1단계에서는 외국변호사 또는 외국 로펌의 국내 업계와의 업무 제휴 또는 국내 변호사 고용은 금지
2단계	협정 발효 후 2년 내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대표사무소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 로펌과 특별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외 법적 쟁점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국내 로펌과 이와 같은 사건 처리에 따른 수익 분배를 할 수 있음
3단계	협정 발효 후 5년 내 시행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함께 합작사업체를 설비한 후, 일정한 요건 아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음(즉, 외국 로펌이 합작 회사를 통하여 국내법 사무까지 다룰 수 있는 단계)

위 단계는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 그대로 적용되는데, 국가별 FTA 협상에서 합의된 법률시장 개방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개방 수준	FTA 협상 대상국
1단계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인도
2단계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3단계	미국, EU(European Union :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27개국)

마.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규제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징계사건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그 밖의 징계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게 된다.

2. 외국변호사 수

200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자는 아직 없다. 다만, 법 시행 이전부터 국내 법무법인 등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변호사가 상당히 많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적별

[2009년 말 기준 / 13개 국내 법무법인 대상 설문결과]

국적	인원(명)	국적	인원(명)
대한민국	85	독일	3
미국	45	오스트레일리아	2
중국	22	뉴질랜드	2
캐나다	7	프랑스	1
우즈베키스탄	4	합계	171

나. 자격취득 국가별

[2009년 말 기준 / 13개 국내 법무법인 대상 설문결과]

국적	인원(명)	국적	인원(명)
미국	124	영국	3
중국	23	독일	3
러시아	6	우즈베키스탄	2
캐나다	5	뉴질랜드	1
오스트레일리아	4	합계	171

- 국내 주요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인의 외국변호사 채용 인원은 171명이며, 이들 국적은 대한민국, 미국, 중국 순이고, 자격취득 국가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 중국, 러시아 등 순서임. 참고로 법률신문 보도(2009년 11월 27일자)에 따르면 로펌,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 취업한 외국변호사 수는 1,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 70% 정도가 미국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09년 3월 외국법자문사법이 제정되고, 관련 등록규정(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함)이 마련됨에 따라 한미 FTA 체결 등 외국변호사의 국내 활동 여건이 조성되면, 많은 외국법자문사가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